

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8월 8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이상민
행정안전부장관
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)

●법률 제19624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 중 “형의 집행유예”를 “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”로, “벌금형”을 “벌금형(집행유예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받고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‘형의 집행유예’가 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’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